

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8. 30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216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8. 18.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(9명 발의)

나. 상정의결

-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8. 30.)
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대표발의자 : 김현정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, 안 제2조 및 안 제3조)
-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, 역학조사반, 역학조사(안 제8조, 안 제9조 및 안 제10조)
-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(안 제16조)
-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(안 제17조)
- 자율방역단(안 제22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, 시행규칙
- 예산조치 : 논의 필요

-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- 기 타
 -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, 서울시 관련 조례 등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,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임.
- 전국적 또는 국지적 감염병 발생 시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지역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자율적인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행정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.
- 본 조례안은 총 2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교육청 포함 전국 173개 지자체가 “감염병의 예방” 관련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며,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교육청과 서초구 등 16개 자치구가 기 시행중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4조(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), 안 제5조(국민의 권리와 의무), 안 제7조(감염병 표본감시 등), 안 제8조(방역관 및 역학조사관), 안 제9조(역학조사반), 안 제11조(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), 안 제12조(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), 안 제20조(예방위원), 안 제22조(자율방역단), 안 제23조(손실보상) 등의 규정들을 구성하여 각 조문 내에 경비 또는 비용 등의 자체재원(구비)이 집행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반영하였음.
- 향후, 본 조례안이 담고 있는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등의 수립(안 제6조)등 및 안 제23조(손실보상) 결정사항을 자문하고 숙의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나 이 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보건소 내 자문위원회 발굴이 필요 없는지 등이 검토가 필요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. 끝

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(김현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6
----------	---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8. 18.

발 의 자: 김현정·복진경·이향숙·강을석·김광심·
이성수·김민경·이도희·우종혁 의원
(이상9인)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, 안 제2조 및 안 제3조)
- 나.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, 역학조사반, 역학조사(안 제8조, 안 제9조 및 안 제10조)
- 다.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(안 제16조)
- 라.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(안 제17조)
- 마. 자율방역단(안 제2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, 시행규칙
- 나. 예산조치 : 논의 필요
- 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남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에 위해(危害)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,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감염병”이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.
2. “감염병환자”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, 강남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
2.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
3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
4.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
5.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
6. 감염병에 관한 조사·연구
7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
8.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
9. 그 밖에 감염병 예방·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

제4조(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)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(이하 “강남구”라 한다) 내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,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.

②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·관리·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·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구민의 권리와 의무) ① 구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.

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,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,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,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

④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

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감염병 예방·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주요 감염병 예방·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
3.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
4.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
5.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7조(감염병 표본감시 등) ① 구청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·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구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·단체·시설 또는 구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표본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방역관 및 역학조사관)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감염병 관련 분야

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을 임명한다.

② 방역관은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며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, 감염병의 매개물인 음식물·물건 등의 폐기·소각,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 권한을 가진다.

③ 구청장은 법 제60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역학조사 교육·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.

④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법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역학조사반)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반장으로 하며 반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강남구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, 시행 및 평가
2. 서울특별시 역학조사반에 역학조사 결과 보고
3. 강남구 감염병의 발생·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

수집, 분석 및 제공

③ 구청장은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역학조사 등)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.

③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환자 또는 보호자는 역학조사에 허위 또는 거짓 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)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.

제12조(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) ① 구청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

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

2. 격리소·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·운영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.

제13조(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)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(入所)를 거부할 수 없다.

제14조(감염병환자 등의 관리)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(病床)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(自家)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.

1.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

2.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

제15조(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) 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제14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6조(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) 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, 선박·항공기·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,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사·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
제17조(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)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

2.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

3.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

제18조(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)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

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0조(예방위원)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법 제62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. 다만, 강남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다.

제21조(소독 의무)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2조(자율방역단)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업무를 수행할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방역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약품

2.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기술이전

③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방역단은 다음 각 호의 주요임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

2. 방역소독 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

3. 강남구 내 방역 취약지 분석 및 보고

제23조(손실보상) ① 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 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다.

제24조(표창 등)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·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